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71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
발 의 자: 박상혁, 강석주, 경기문,
고광민, 김규남, 김길영,
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일, 김원중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박 석,
박영한, 박춘선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
옥재은, 윤기섭, 이경숙,
이민석, 이병도, 이병윤,
이봉준, 이상욱, 이숙자,
이종배, 이희원, 임만균,
임춘대, 장태용, 채수지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
황유정, 황철규 의원(44
명)

1. 제안이유

- 1·2인 가구가 증가하고,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 필요함
- 또한,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·시행('23.02.14.) 되어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기숙사가 추가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정도 변경됨
- 이에 조례 제55조제16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상에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기숙사(연면적의 50%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)를 추가하여,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유형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용적률 완화대상에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호의 공공주택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(연면적의 50%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) 추가 (안 제55조제16항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6항 본문 중 “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”를 “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(연면적의 50%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⑮ (생 략)	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⑮ (현행과 같음)
⑯ 제1항제5호와 제6호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, 제3호의 행복주택이나 <u>제4호의 장기전세 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</u>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로 하고,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.	⑯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4호의 장기전세 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 (연면적의 50%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⑰ ~ ㉓ (생 략)	⑰ ~ ㉓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제16항 중 용적률 완화대상에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1)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 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